

고 성 군 도 시 계 획 조 례 안

(의안번호 제647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 10. 18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0. 10. 19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0. 10. 28

산업건설위원회 상정·수정의결

2. 제안이유

- 도시계획법령의 전면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환경친화적이며,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우리군의 도시성장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가.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 주민의견 참여기회 제공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영토록 함. (안 제3조 내지 제6조)
- 나.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안의 대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매수치 못할 경우 건축제한 완화 등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도모 (안 제10조)
- 다. 개발행위(토지형질변경, 토석의 채취 등)에 대한 허가행위 대상을 한정하고 허가기준을 구체화하여 허가절차를 투명하게 하였음.
(안 제11조 내지 제17조)
- 라. 주거지역의 지나친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·제2종·제3종으로 세분하고 건폐율·용적율은 최대 허용기준에서 적정 수준으로 하향 조정함. (지역별 용적율 :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0%,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%, 제3종 일반주거지역 300%, 준주거지역 300%, 일반상업지역 500%, 일반공업지역 200%, 생산녹지지역 60%, 자연녹지지역 60%) (안 제24조 내지 제26조, 안 제34조)

마. 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, 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함.(안 제36조 내지 제45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도시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전면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성군의 지속적인 도시발전 성장관리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의 도시계획조례표준안을 근거로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여부, 제정의 필요성, 당위성 등 종합적으로 내용을 검토한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지나
- 동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를 위하여 고성군 인터넷 홈페이지의 사이트가 개설되어 있음에도 이를 활용치 아니하고 일반 주민이 거의 열람·공람의 빈도가 미미한 읍면게시판, 고성군공보지에 게재하는 등 입법예고의 국민의견 수렴이 미약했던 점을고려 일반 주민의 이해관계가 많이 따르는 안 제34조 건폐율 적용내용과 안 제35조 지역별 용적율 적용에 대하여 고성군 지역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,
- 또한 전반적인 체계, 형식 및 자구 수정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안 제34조의 주민들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건폐율의 지정에 대한 고성군 지역실정에 맞는 적절한 기준은 무엇인지
- 답 : 건폐율은 상위법에서 준하는 기준의 지정 범위내에서 고성군 지역 정서와 실정에 맞는 최선의 적정선을 선정하였음.
- 문 : 안 제35조의 지역별 용적율 지정기준의 근거는 무엇인지
- 답 : 상위법에서 지정하는 기준의 중간을 선택한 것도 있고 현행 고성군 건축조례에서 지정하고 있는 용적율을 근거로 하여 지정하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함은 크게 없을 것임.

6. 토 론

- 안 제3조(도시계획입안의 제안에 대한 반영기준 및 절차 등) 제1항 중 “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” 다음에 “입안에의”를 삭제한다.
- 안 제15조(이행보증금) 중 “영 제48조제3항의 규정에” 앞에 “①”를 삽입한다.
- 안 제34조 중 “(건폐율)” 다음에 “①”를 삭제한다.
- 안 제46조 중 제목 “(시행세칙)”을 “(시행규칙)”으로 하고 “이 조례에 관하여”를 “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”으로 한다.
- 안 부칙 제5조(다른조례의 개정) 중 “제15조 내지 제25조”를 “제15조 내지 제20조, 제22조, 제24조 내지 제25조”로 한다.
※ 붙임 : 고성군도시계획조례안에대한수정(안)

7. 심사결과

- 2000. 10. 28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

의안번호	제 647 호
의결년월일	2000. 11. . (제 81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자	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
제안년월일	2000. 10. 28.

고성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647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0. 10. 28.

제안자 :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사유

- 고성군도시계획조례안의 내용중 일부 용어를 간결화 하고 자구수정을 하여 입법형식상·표현상의 일반원칙에 맞도록 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안 제3조(도시계획입안의 제안에 대한 반영기준 및 절차 등) 제1항 중 “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” 다음에 “입안에의”를 삭제한다.
- 안 제15조(이행보증금) 중 “영 제48조제3항의 규정에” 앞에 “①”를 삽입한다.
- 안 제34조 중 “(건폐율)” 다음에 “①”를 삭제한다.
- 안 제46조 중 제목 “(시행세칙)”을 “(시행규칙)”으로 하고 “이 조례에 관하여”를 “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”으로 한다.
- 안 부칙 제5조(다른조례의 개정) 중 “제15조 내지 제25조”를 “제15조 내지 제20조, 제22조, 제24조 내지 제25조”로 한다.

- ## 3. 붙임 : 1. 수정안 본문 2. 수정안대비표

고성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고성군도시계획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(도시계획입안의 제안에 대한 반영기준 및 절차 등) 제1항 중 “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” 다음에 “입안에의”를 삭제한다.

안 제15조(이행보증금) 중 “영 제48조제3항의 규정에” 앞에 “①”를 삽입한다.

안 제34조 중 “(건폐율)” 다음에 “①”를 삭제한다.

안 제46조 중 제목 “(시행세칙)”을 “(시행규칙)”으로 하고 “이 조례에 관하여”를 “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”으로 한다.

안 부칙 제5조(다른조례의 개정) 중 “제15조 내지 제25조”를 “제15조 내지 제20조, 제22조, 제24조 내지 제25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 정 안 대 비 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3조(도시계획입안의 제안에 대한 반영 기준 및 절차등) ①군수는 법 제20조에 의하여 주민이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<u>입안의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3조(도시계획입안의 제안에 대한 반영 기준 및 절차등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(삭 제) -----</p>
<p>제15조(이행보증금) 영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·위해의 방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이라 함은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공공시설의 설치·위해의 방지·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.</p>	<p>제15조(이행보증금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34조(건폐율) ①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용도지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.</p>	<p>제34조(건폐율) (삭제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46조(시행세칙)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4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----- ----- -----</p>
<p>부칙 제5조(다른 조례의 개정) 고성군건축조례중 제15조 내지 제25조 및 제30조 내지 제31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21조 및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	<p>부칙 제5조(다른 조례의 개정) ----- --제15조 내지 제20조, 제22조, 제24조 내지 제25조----- -----</p>